

제 5 장

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

제 1 절

무역원활화

제 5.1 조

적용범위 및 목적

1. 이 장은, 양 당사국의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, 양 당사국 사이에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.
2.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양 당사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
 - 나. 양 당사국의 행정 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, 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
 - 다.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반출 및 운송수단의 이동 보장
 - 라. 양 당사국간 무역의 원활화, 그리고
 - 마.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

제 5.2 조

권한있는 당국

1. 이 장의 운영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이란,
 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 - 나. 폐루에 대해서는,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.

2. 각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접촉 부서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러한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를 제공한다.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의 변경을 신속히 서로 통지한다.

제 5.3 조 원활화

1.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, 일관성 있으며, 투명하고, 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.

2. 가능한 경우 그리고 각각의 관세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,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당사국이 그 당사국인 세계관세기구(이하 “WCO”라 한다)의 무역 관련 합의문서에 부합한다. 이 합의문서에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(교토 협약)(개정판)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(개정 교토 협약)의 것들도 포함된다.

3. 각 당사국은 최소한의 서류 요건으로 상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, 통관 사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,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.

4.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.

5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업자들이 이를 통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규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다른 방식의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5.4 조 관세평가

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한다.

제 5.5 조 품목분류

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한다.

제 5.6 조 재심 및 불복청구

1. 각 당사국은,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,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¹⁾에 대해,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²⁾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 - 가.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,
 - 그리고
 - 나.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

2.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

1) 이 조의 목적상, 폐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행정행위를 의미한다.

2) 이 인에게는 재심 또는 불복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양해된다.

다.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.

제 5.7 조 사전심사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의 사안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.
 - 가. 품목 분류
 - 나. 원산지 규정의 실행, 그리고
 - 다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
2. 이러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최대 120일의 기간 또는 당사국이 설정한 더 짧은 발급 기간
 - 나. 사전심사결정서의 확인, 취소 및 공표를 위한 조건, 그리고
 - 다. 제재 조치
3. 수입자,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특히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규정 등의 통관 사안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.
4. 특히 기한 등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, 사용, 취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다.
5. 폐루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이행한다.

제 5.8 조 종이없는 무역 환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

1.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진전을 고려하여,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경우, 통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.
2.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 아니라 선적의 도착 전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.
3. 상품이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양 당사국의 통관 영역에 들어오거나 그로부터 나갈 때에는, 양 당사국은 관련된 국내 당국이 그 상품을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검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5.9 조 위험관리

1.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, 고위험 상품 선적에 대한 검사 활동에 집중하고 반출을 포함하여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촉진한다. 추가적으로 관세행정기관은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위험관리 응용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.
2. 각 당사국은 공급망을 통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 기관이 제공한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.
3. 양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한다.

제 5.10 조 공표 및 문의처

1.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 절차를 공표한다.
2.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통관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.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 공개된다.
3.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관장하는 그 관세법 또는 절차를 현저하게 수정하는 경우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게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노력한다.

제 5.11 조 특송 화물

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도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. 통상적인 상황에서는, 이러한 절차는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필요한 통관 문서가 제출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제공한다.

제 5.12 조 상품의 반출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.
2. 제1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자국 관세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길지 않은 기간 내에,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도착 이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
 - 나.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, 상품의 실제 도착 이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
 - 다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,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, 그리고
 - 라. 자국 관세행정기관이 적용하는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,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,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
3.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, 세금 및 수수료의 최종 지불액을 포괄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, 보증금,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2 절 통관 협력

제 5.13 조 통관 협력

1. 양 당사국은 통관 및 통관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상품의 적법한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, 이 협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.

3.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 법령에 위반되는 작업의 방지, 적발 및 조사에 의해 그 법령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, 그 권한 내의 분야에서 이 장에 규정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서로 지원한다.

4.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.

- 가. 양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, 수입, 수출 및 상품의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및 자료 요소의 국제기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
- 나. 당사국의 관세 분석소 및 과학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, 그리고 관세 분석 기법을 조화하도록 노력하는 것
- 다. 양 당사국의 통관 전문가를 교환하는 것
- 라.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해 통관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
- 마. 무역업계 및 재계와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
- 바. 가능한 범위에서, 수입된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품목 분류,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,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그 밖의 통관 사안에 있어 서로 지원하는 것
- 사. 수입, 수출, 재수출, 통과, 환적 및 그 밖의 통관 절차 그리고 특히 위조 상품에 대해서 관세당국에 의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촉진하는 것, 그리고
- 아.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수입되거나,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서 환적하거나, 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를 통과하는, 모든 지역으로부터의, 해상 컨테이너 및 그 밖의 선적의 교역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개선하는 것.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장된 협력의 목적이 다

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.

- 1)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통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, 그리고
- 2) 가능한 범위에서, 컨테이너 안정성 관련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 협의체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

제 5.14 조 통관 협력의 이행

1. 이 절의 이행은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위임된다. 관세행정기관은 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현행 규칙을 고려하여 이 절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세부적 이행 규칙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.
3. 양 당사국은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부서를 교환한다.

제 5.15 조 통관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

1.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받은 당국은 비특혜 원산지, 품목 분류, 평가, 원산지 결정 및 관세 법령 위반 또는 위반일 수 있는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 준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.
2.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받은 당국은, 적절한 경우 상품에 적용된 통관 절차를 구체화하여,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으로부터

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적절히 수입되었는지를 통지한다.

3.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받은 당국은 자국법의 범위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- 가. 관세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
- 나.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보관되는 장소
- 다.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된 상품의 이동, 그리고
- 라.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,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

4. 당사국이 특히 다음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주도적으로 자국 법, 규정 및 그 밖의 법적 수단에 따라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.

- 가. 그러한 법령의 위반이거나 위반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와 관련된 행위
- 나. 그러한 행위의 수행에 있어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
- 다.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인 것으로 알려진 상품
- 라.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, 또는
- 마.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,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

제 5.16 조

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

1.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. 서면 요청에는 요청 준수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수반된다. 긴급한 상황인 경우, 구두 요청도 인정될 수 있으나,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.
2.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.
 - 가. 신청 당국
 - 나. 요청되는 조치
 - 다. 요청의 목적 및 이유
 - 라. 관련된 법 또는 규정 조항 및 그 밖의 법적 요소
 - 마. 조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적시, 그리고
 - 바. 관련 사실 및 이미 실시된 질의의 요약
3. 요청은 영어로 제출된다. 요청서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, 요청받은 당국은 신청 당국에 대해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4. 요청이 위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수정이나 완성이 요구될 수 있다.

제 5.17 조

요청의 실행

1. 지원 요청에 따르기 위해, 요청받은 당국은 그 권한 및 가용한 지원의 범위 내에서,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그 동일한 당사국의 그 밖의 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한 정보의 제공, 적절한 질의의 실시, 또는 그러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. 이 항은 요청받은 당국 스스로가 실행할 수 없어 그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.

2. 지원 요청은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규 조항에 따라 실행되며, 답변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송부된다.

3.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어느 한 쪽 공무원은 신청 당국이 이 장의 목적상 필요로 하고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거나 행위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당국 또는 그 밖의 관계 당국의 사무소에 있을 수 있다.

4.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의 공무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조사 또는 검증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 5.18 조 지원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지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
- 가. 그러한 지원이 주권, 공공정책, 안전 또는 그 밖의 핵심적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나. 그러한 지원이 관세 법령 외의 통화 또는 조세 규정과 관련되는 경우, 또는
- 다. 그러한 지원이 산업적, 상업적 또는 직업적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

2. 요청 받았다면 신청 당국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신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, 그 당국은 그 요청에서 그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.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요청받은 당국이 결정한다.

3. 지원이 거절된 경우, 그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유가 지체 없이 신청 당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
제 5.19 조

비밀유지

1. 이 장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비밀 또는 접근제한 정보로 취급된다. 그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의무의 적용을 받으며, 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국의 관련법상 유사한 정보에 제공되는 보호를 향유한다.

2. 식별되어 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, 즉 신원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이 그러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방식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.

제 5.20 조

정보의 이용

1. 획득된 정보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한다.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이후 그 당국이 정한 제한에 따른다.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그 밖의 당국에 통지될 수 있다.

2. 제1항은 관세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정된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를 받는다.

3. 양 당사국은 그 증거,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사법절차에서 이 장에

따라 획득한 정보 및 협의 문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 5.21 조 전문가 및 증인

요청받은 당국의 공무원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인 사안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출두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으며, 그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물, 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 출두 요청서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직함 또는 자격으로 그 공무원이 질의 받게 될 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.

제 5.22 조 지원 비용

적절한 경우, 전문가 및 증인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통역가 및 번역가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,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배상에 대한 모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한다.

제 5.23 조 통관 절차의 검토

-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의 추가적 간소화 및 양 당사국간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약정의 개발을 위해 그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.
- 통관 통제에 대한 위험관리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,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의 시스템의 성능,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.

제 5.24 조

협의

1. 제5.25조를 저해함이 없이,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품목 분류,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,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 부서를 통해 수행되며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.
2. 그러한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.25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·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 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.
3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다.

제 5.25 조

관세·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) 및 제4장(원산지 절차)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관세·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한다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,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.
2. 위원회는 권한있는 당국 및 원산지 규정, 원산지 절차, 무역원활화 및 통관 사안을 책임지는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관련 당국으로 구성된다.

3. 위원회는,

- 가.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) 및 제4장(원산지 절차)의 효과적, 통일적, 일관적 운영을 보장하고,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을 제고한다.
- 나. HS가 변경되는 것에 근거하여 부속서 3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를 유지한다.
- 다.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.
 - 1)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) 및 제4장(원산지 절차)의 해석, 적용 및 운영
 - 2)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 분류 및 관세평가
 - 3)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, 그리고
 - 4)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,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) 및 제4장(원산지 절차)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의 당사국에 의한 채택
- 라.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을 채택한다.
- 마. 품목 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,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. 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, 위원회는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하고 그의 권고를 추구한다. WCO의 그러한 권고는 양 당사국에 의해 적용된다.
- 바. 양 당사국간 총의가 이루어진 경우, 공동위원회에 제4.12조(수정)에 따른 수정 제안의 승인을 제안한다.
- 사. 전자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작업을 진행한다. 그리고
- 아. 제2.17조(상품무역위원회)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원산지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.

4. 위원회는 공동 목표와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) 및 제4장(원산지 절차)에 구성된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의,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.

제 3 절

정의

제 5.26 조

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신청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하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.

관세 법령의 위반이란 그 법령의 모든 위반 또는 위반의 시도를 말한다.

관세행정기관이란,

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폐루에 대해서는, 국립 조세행정 감독원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.

관세법이란 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해 시행, 적용 또는 집행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.

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, 수출 및 통과, 그리고 금지, 제한 및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상품을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폐루에 의해 채택된 모든 법규 조항을 말한다.

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처리를 말한다.

상품이란 HS의 제1류에서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.

운송수단이란 인,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, 차량,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. 그리고

요청받은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받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.